

2017년 촉탁계약직  
임금협약

2017년 12월 14일

서울특별시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 전 문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서울지역공무직지부(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상호 존중하고 노동조건과 생활조건을 유지·개선함으로써 조합원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지위를 향상하고자 이 협약을 체결하며 상호 성실히 준수·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제1조(적용범위) 본 임금협약의 적용범위는 촉탁계약직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2조(임금저하 불가) '서울시'는 촉탁계약직의 고용유지 기간 중 지불형태 변경, 예산축소, 생산성 저하, 경영부실 등을 이유로 기 지급하고 있는 임금총액을 저하시킬 수 없다.

제3조(임금체계) ① 촉탁계약직의 봉급은 연차별 임금표 [붙임]에 따른다.

② 촉탁계약직은 연차별 임금표 [붙임]의 근무연수에 따라 지급한다.

제4조(임금의 구성항목) 임금협약 제3조의 봉급표상 월급여에는 기본급 및 식대가 포함된 것으로 한다.

제5조(급여지급) ① 촉탁계약직의 봉급은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② '서울시'는 봉급표 상 13분의 1에 대한 금액을 매월 지급한다.

③ 촉탁직의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는 복지수당으로 전환하며, 2016년 1월부터 매월 15만원 균분하여 지급한다.

④ 촉탁계약직의 봉급은 2017. 1월부터 적용하여 시행하며, 인상소급금과 인상임금을 2017년 12월에 지급한다. 다만, 예산문제가 있는 부서의 경우 2018년 1월에 지급할 수 있다.

제6조(명절휴가비) ① '서울시'는 촉탁계약직에게 명절휴가비를 봉급표상 지급총액 중 13분의 1에 대한 금액을 설과 추석에 동일하게 나누어 지급한다.

② 입사, 복직, 휴직, 퇴직하는 명절휴가비는 일할계산 한다.

③ 제2항의 일할계산은 설날의 경우 1~6월 기준으로 하고, 추석은 7~12월 기준으로 한다.

제7조(효력의 연장) 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새로운 협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기 협약된 임금을 계속 지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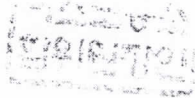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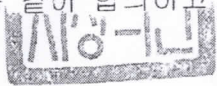
제8조(시행) 본 협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시행하되, 임금은 2017.1월부터 소급적용 한다.

부속합의서

1. 촉탁계약직은 신규채용을 통해 61~65세까지 고용유지를 원칙으로 한다.  
(계약종료는 만65세 되는 해의 12월말로 한다)
2. 촉탁계약직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촉탁계약직 단체협약을 따른다.
3. 매년 생일을 맞이한 자에게 포상금 20,000원(상품권 가능)을 지급한다.(2017.1.1.시행)

2017.12.14.

서울특별시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서울지역공무직지부는 임금협약 본 규정 및 부속합의서와 같이 합의하고 서명 날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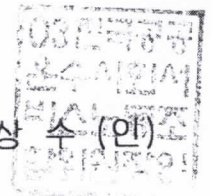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인)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위원장

조상수 (인)



노동정책담당관

박경환 (인)

서울지역공무직지부장  
직무대행

손주택 (인)



<붙임>

○ 축탁계약직 연차별 임금표 [청소, 경비, 대민종사원(운전, 주차)]

(단위 : 원)

연차	월급여 총액 (1/12금액 매월지급)	월급여	명절휴가비 (설, 추석50% 금액 지급)	복지수당 (연간180만원)	지급총액	시간급
1	19,993,080	1,666,090	1,666,090	1,800,000	23,459,170	9,354
2	20,221,320	1,685,110	1,685,110	1,800,000	23,706,430	9,452
3	20,449,560	1,704,130	1,704,130	1,800,000	23,953,690	9,551
4	20,677,800	1,723,150	1,723,150	1,800,000	24,200,950	9,650
5	20,906,040	1,742,170	1,742,170	1,800,000	24,448,210	9,748

